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. 21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택정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재평, 서기관 박진호, 사무관 이중곤 • ☎ (044) 201-3384, 3387
	서울특별시	주거정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진경식, 팀장 함창록, 주무관 정동훈 • ☎ (02) 2133-7231, 7232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주요 보도내용>

- ◆ 검찰, 한남3구역 재개발 '과열 수주전' 건설사 무혐의 결론(1.21, 파이낸셜뉴스)
- ◆ 한남3재개발 건설3사 검찰수사 '무혐의' 결론(1.21, 중앙일보)
- ◆ 검찰,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'과잉수주전' 건설사 3곳 무혐의(1.21, 연합뉴스)

- **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·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, 일반분양가 보장, 임대주택 제로,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,**
- **현행 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 제30조 및 「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」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「도정법」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·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며,**

제30조(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)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, 이주비, 이주촉진비,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,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「도정법」 제137조에 따른 벌칙(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)이 적용됩니다.

-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,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
-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,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여
-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,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정비과 박진호 서기관, 이종근 사무관(☎ 044-201-3384, 33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